

은행 자체 심의 번호: 2013-C-202은행 자체 심의일: 2013.04.16.작성 기준일: 2013.04.15.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이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2. 거래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자산관리기관)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3 개월, 6 개월, 1 년, 2 년, 3 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단위: 연%, 세전)

적용	0	율

기간	DB 형		DC/IRA 형	
	연이율	연수익률	연이율	연수익률
3 개월	2.34~2.59	-	2.59	-
6 개월	2.35~2.61	-	2.61	-
1 년	2.39~2.65	2.39~2.65	2.65	2.65
2 년	2.51~2.78	3.14~2.74	2.78	2.78
3 년	2.63~2.92	2.56~2.84	2.92	2.84

- □ 상기 이율은 2014.08.01~2014.08.15 까지 적용 가능한 이율입니다.
- □ 위 기간 이후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이율 :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

예치기간	이 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1. 경과월수 : 입금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단, 경과

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계약월수 : 입금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단, 계약기간

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

3.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구 분	내 용
중도해지 (계속)	2) 특별중도해지 사유 "" 다음의 시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제 예치기간을 계산한 후,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의 기간별 약정이율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고시이율을 적용 기: 퇴직, 연금자급 등 급여자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① 무주택자인 기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기업자 또는 그 부양기록이 6월 이상 요앙을 하는 경우 ③ 기업자가 "채무자 화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생 절차가사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기업자가 "채무자 화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자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라.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자가 불기피한 경우 마. 수탁자의 사임 바.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사.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아.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나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자. 수수료의 징수
분할해지	1) 만기해지 포함 3 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 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
자동재예치	1)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최초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 2) 최초 신규 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 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 생략 가능 3)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함
예금자보호	1) 확정급여형(DB)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1) 추가 우대금리 및 만기 후 금리는 없음 2) 질권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하며, 통장 미발급 3) 세금 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불가함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KNB 고객만족센터(1600-858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u>www.knbank.co.kr</u>)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